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여비지급기준)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는 별표1의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제8조(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1항 “별표3에 의한 여비를”을 “별표1에 의한 식비와 별표3에 의한 여비를”로 한다.

제2항 “부산직할시 남구관내의”를 “부산직할시내에서의”로 한다.

【별표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중 “제7조 제2항 관련”을 “제7조 제3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국내여비지급 기준표 (제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의 장	1 등급	2 등 정액	정 액	정 액	갑지5,000 을지4,500	갑지17,000 을지15,000	갑지11,000 을지 9,500	800
의 원	2 등급	2 등 정액	정 액	정 액	갑지4,500 을지4,000	갑지14,000 을지11,500	갑지10,500 을지 9,000	800

- 비 고 : 1. “갑지”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 운임 및 항공 운임의 정액은 교통부 장관의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 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 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여비지급 기준) ① (생략) <u>(신설)</u></p> <p>② (생략)</p> <p>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u>별표3에 의한 여비</u>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라함은 <u>부산직합사 남구관내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을 말한다.</u></p> <p>【별표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u>제7조제1항 관련</u>)</p> <p>○ 내용 별지 참조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u>제7조제2항 관련</u>) ○ (내용 생략)</p>	<p>제7조(여비지급 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 <u>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의 여비는 별표1의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한다.</u> 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_____ _____ <u>별표1에 의한 식비와 별표3에 의한 여비를 _____</u> ② _____ _____ <u>부산직합사내에서의 출장이나 _____</u> _____</p> <p>【별표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u>제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u>) ○ 내용 별지 참조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u>제7조제3항 관련</u>) ○ (현행과 같음)</p>